**수익증권 매매계약서**

본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21년 11월 8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  |  |
| --- | --- |
| **매도인:**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

**전 문**

매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형태로 설정된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이하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합계 이백삼십사억일천삼백칠십육만일천삼백사십구(23,413,761,349)좌 (최초 설정 당시 기준가 1좌당 금 일원(₩1))를 소유하고 있다.

매도인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이백삼십사억일천삼백칠십육만일천삼백사십구(23,413,761,349)좌(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수익증권의 매매)**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 등)**

1.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이백삼십사억일천삼백칠십육만일천삼백사십구원(￦23,413,761,349)으로 한다(이하 “매매대금”).
2. 매수인은 2021년 11월 9일(이하 “거래종결예정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  |  |
| --- | --- |
| 계좌개설은행 | 하나은행 |
| 계좌 명의인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547-910001-05005 |

1. 매수인은 거래종결예정일까지 매매목적물의 양수도에 대하여, 매도인과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본건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2021년 9월 30일 체결한 투자계약서(이후 수정 및 변경된 계약서를 포함)의 별지4 양식에 따라 양수확약서(이하 “본건 양수확약서”)를 작성하여 본건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한 뒤 본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전부를 본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이하 “판매회사”)에 개설된 매수인의 수익증권고객계좌(계좌번호: [\*], 계좌주: [\*])로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증빙(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익증권고객계좌부의 인증된 사본) 및 현재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서류 중 공유 가능한 범위 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투자신탁의 수익자명부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제2조 제3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매매의 효력)**

1.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이 모두 완결(이하 “거래종결”)된 때에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자로서의 일체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거래종결된 날(이하 “거래종결일”)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기타 일체의 이익금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매매대금 지급의 선행조건)**

1. 매수인의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6조의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매도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할 것
4. 매도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5. 제2조 제3항에 따른 양수확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본건 집합투자업자의 동의가 완료될 것
6. 매도인의 제3조에 따른 매도절차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제7조의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
8. 매수인이 자신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매도인에게 교부할 것
9. 매수인이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부수권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을 것
10. 제2조 제3항에 따른 양수확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본건 집합투자업자의 동의가 완료될 것

**제6조 (매도인의 진술·보장 및 확약)**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거래종결일 현재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고,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매매목적물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한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4.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도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도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매도인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매도는 매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매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害)할 의도로 매매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7.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타인의 동의, 승인이나 통지는, 매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완료하였거나 거래종결일까지 완료하여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한 상태에 있다.
8. 매도인이 아는 한,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및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서류 등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7조 (매수인의 진술·보장)**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2.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매수하고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 정부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매수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제8조 (손해배상)**

1. 일방 당사자(이하 “위반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사항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이하 “피위반당사자”)에게 어떠한 손실, 청구, 손해, 채무 또는 비용(이하 총칭하여 “손해”)이 발생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피위반당사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위반당사자로 하여금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피위반당사자가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당사자에게 손해액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위반당사자의 고의 또는 사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세금 및 비용)**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 및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0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  |  |
| --- | --- |
| **매도인:**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참조: 이일규 과장  전화: 02-3771-3368  전자우편: ilgyulee@hanafn.com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참조: [\*]  전화: [\*]  전자우편: [\*] |

**제11조 (양도; 매도인의 관계)**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일부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는 본 계약의 당사자의 서면 동의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본 계약과관련하여 법률고문 또는 회계사, 기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계약의 체결ㆍ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본 계약의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한 다음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 --- | --- |
| **매도인:**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직위: |

본 계약의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한 다음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 --- | --- |
| **매수인:** |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직위: |